

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6
----------	-----

제출년월일 : 2005년 3월 일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 안 이 유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천시세조례의 일부내용을 법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을 조정(제3조 제2항 제8호, 제2장 제7절 삭제, 제23조 개정)
-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며, 부동산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등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인하에 따른 조문개정 (제25조, 제27조개정, 제27조의2 신설)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른 비과세·감면 신청서 제출규정을 개정 (제27조의3 신설, 제28조 개정)
-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중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개정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주행세 세율이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제37조, 제40조의3)
- 담배소비세 규정중 지방세법시행령 제173조의2(조정세율)가 신설됨에 따라 조정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그 조정세율을 담배소비세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제55조 제3항신설)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규정을 준용하였던 도시계획세를 새로 개정되는 재산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제83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94조)
- 과세표준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2에서 1000분의1.2로 인하 (제91조)
- 지방세법 부칙 제1조에서 개정된 자동차세의 세율적용 시기를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부칙 제5조에서 농업소득세 규정은 2005년 1월 5일 이후 5년간 과세를 중단하도록 함으로서 조례에서도 부칙으로 같은 특례규정을 정함.

3. 근거 법령 : 지방세법(붙임)

4. 의안전문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첨부: 1. 기타참고자료(준칙안) 1부

2. 입법예고(사본) 1부

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기항지(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
 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6조중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을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3) (1) 및 (2)의외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7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28조중 제3호를 제5호로, 제4호를 제6호로, 제5호를 제7호로,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제29조제1항중 “법 제184조”를 “법 제186조”로 한다.

제30조제목중 “구판사업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제1항제1호내지 제4호 및 제2항 중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32조의제목중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를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로 하고, 동조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제3호의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되었을 때”를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 때”로 하고 제4호의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를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로 하며, 제5호의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제6호의 “건축물”을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7조제1항제1호 표의 배기량 란 중 “1,500cc이하”를 “1,600cc이하”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중 “1,000분의 175”를 “1,000분의 215”로 한다.

제5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2장 제7절을 삭제 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5조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6조제1항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제2항중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및 제2항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91조중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한다.

제92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3조제1항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관할 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 제5호 및 제6호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며 제3호 및 제4호중 “비과세건축물”을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과세건축물”을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하고, 제3항중 “법 제192조”를 “법 제194조”로 하고, 제4항중 “관할 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법 제234조의21”을 “법 제194조”로 하고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4조중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 제4절의 규정(제41조 내지 제51조)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세목) ① (생략)</p> <p>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7. (생략)</p> <p>8. 종합토지세</p> <p>③ (생략)</p>	<p>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삭제></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3조(과세대상 등) ①재산세는 시안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p> <p>② (생략)</p>	<p>제23조(과세대상 등)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기항지(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p> <p>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④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p>

현행	개정안
<p>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p> <p>⑥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중증재산으로서 중증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현행	개정안
	<p>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제25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제25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제26조(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p>	<p>제26조(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 ----- -----</p>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세율) ① 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세율) ① ----- -----
1. 건축물	1. 토지
(1) 주택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1,000분의 3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1,200만원초과 3만6천원+1,200만원	5,000만원초과 10만원+5,000만원
1,6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
1,600만원초과 5만6천원+1,600만원	의 3
2,2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2,200만원초과 11만6천원+2,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
3,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의 5
3,000만원초과 36만6천원+3,000만원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4,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초과 85만6천원+4,000만원	2억원이하 1,000분의 2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2억원초과 40만원+2억원
(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10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
그 가액의 1,000분의 50	의3
(3)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 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6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 물	초과금액의 1,000
그 가액의 1,000분의 3	분의4
2. 선박	다. 분리과세대상
(1) 고급선박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그 가액의 1,000분의 50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
(2) 제1목 이외의 선박	의 0.7
그 가액의 1,000분의 3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3.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
	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
	의 1,000분의 40

현행	개정안								
<p>②(생략)</p>	<p>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 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p> <p>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p> <p>3. 주택</p> <p>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p> <p>나. 가목이외의 주택</p> <table border="0" data-bbox="722 930 1293 1274"> <tr> <td data-bbox="722 930 951 970"><과세표준></td> <td data-bbox="951 930 1293 970"><세율></td> </tr> <tr> <td data-bbox="722 980 951 1019">4,000만원이하</td> <td data-bbox="951 980 1293 1019">1,000분의 1.5</td> </tr> <tr> <td data-bbox="722 1029 951 1099">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td> <td data-bbox="951 1029 1293 1099">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td> </tr> <tr> <td data-bbox="722 1159 951 1198">1억원초과</td> <td data-bbox="951 1159 1293 1228">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td> </tr> </table> <p>4. 선박</p> <p>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p> <p>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p> <p>5. 항공기</p> <p>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p> <p>②(현행과 같음)</p>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27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 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 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p>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p> <p>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제 천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p> <p>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p>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 ----- ----- ----- ----- ----- ----- -----</p>

현행	개정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p>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6조 -----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30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p>	<p>제30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동산 2. ----- 부동산 3. -----부동산 4. -----부동산 <p>②-----부동산 -----</p>
<p>제32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 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되었을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p><신설></p>	<p>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 및 주택 ----- 2. 건축물 및 주택 ----- -----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5. 건축물 및 주택 ----- -----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현 행	개 정 안																																																								
<p>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 1대 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승용자동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colspan="2">영 업 용</th> <th colspan="2">비 영 업 용</th> </tr> <tr> <th>배기량</th> <th>시시당 세액</th> <th>배기량</th> <th>시시당 세액</th> </tr> </thead> <tbody> <tr> <td>1,000cc이하</td> <td>18원</td> <td>800cc이하</td> <td>80원</td> </tr> <tr> <td>1,500cc이하</td> <td>18원</td> <td>1,000cc이하</td> <td>100원</td> </tr> <tr> <td>2,000cc이하</td> <td>19원</td> <td>1,500cc이하</td> <td>140원</td> </tr> <tr> <td>2,500cc이하</td> <td>19원</td> <td>2,000cc이하</td> <td>200원</td> </tr> <tr> <td>2,500cc초과</td> <td>24원</td> <td>2,000cc초과</td> <td>220원</td> </tr> </tbody> </table> <p>1의2. ~ 6. 생략</p> <p>② (생 략)</p> <p>제40조의3(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법 제196조의17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u>1,000분의 175</u>로 한다.</p> <p>②(생 략)</p> <p>제53조(납세의무자) ① ~ ④(생 략) <u><신 설></u></p>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800cc이하	80원	1,5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100원	2,000cc이하	19원	1,500cc이하	140원	2,500cc이하	19원	2,000cc이하	200원	2,500cc초과	24원	2,000cc초과	220원	<p>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p> <p>1. 승용자동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colspan="2">영 업 용</th> <th colspan="2">비 영 업 용</th> </tr> <tr> <th>배기량</th> <th>시시당 세액</th> <th>배기량</th> <th>시시당 세액</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600cc이하</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1,600cc이하</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1의2.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0조의3 ①----- ----- ----- <u>1,000분의 215</u>-----.</p> <p>②(현행과 같음)</p> <p>제53조(납세의무자) ① ~ ④(현행과 같음)</p> <p>⑤<u>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u></p>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	-----	-----	-----	1,600cc이하	-----	-----	-----	-----	-----	1,600cc이하	-----	-----	-----	-----	-----	-----	-----	-----	-----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800cc이하	80원																																																						
1,5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100원																																																						
2,000cc이하	19원	1,500cc이하	140원																																																						
2,500cc이하	19원	2,000cc이하	200원																																																						
2,500cc초과	24원	2,000cc초과	220원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	-----	-----	-----																																																						
1,600cc이하	-----	-----	-----																																																						
-----	-----	1,600cc이하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p>제55조(세율) ① ~ ②(생 략) <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절 종합토지세 (제71조 - 제82조)</p>	<p>제55조(세율)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 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 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절 종합토지세<삭제> <삭 제></p>
<p>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 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토지 <u>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u></p> <p>2. 건축물 <u>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 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u></p>	<p>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 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 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 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 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제85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 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 기</p> <p>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에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p>	<p>제85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p> <p>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 기</p> <p>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에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p>

현행	개정안
<p>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u>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토지·건축물 및 주택----- ----- ----- ②----- -----재산세과세대장----- ----- -----</p>
<p>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토지·건축물 및 주택----- -----토지·건축물 및 주택----- ----- ----- ②----- -----토지·건축물 및 주택----- ----- -----</p>

현 행	개 정 안									
<p>제89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이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p>	<p>제89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p>	<p>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대상</th> <th>과세기준일</th> <th>납 기</th> </tr> </thead> <tbody> <tr> <td>건 축 물</td> <td>매년 5월 1일</td> <td>매년 6월 16일 ~ 6월 30일</td> </tr> <tr> <td>토 지</td> <td>매년 6월 1일</td> <td>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td> </tr> </tbody> </table>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건 축 물	매년 5월 1일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	토 지	매년 6월 1일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p>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p>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건 축 물	매년 5월 1일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								
토 지	매년 6월 1일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p>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p> <p>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p> <p>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제91조(서울) 도시계획세의 서울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91조(서울) -----1,000분의 1.5-----.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재산세----- -----재산세-----.
제93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신고의무) ①-----건축물 및 주택----- -----시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u>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u> 된 때 4. <u>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u>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건축물 및 주택</u> ----- 2. <u>건축물 및 주택</u> ----- 3. <u>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u>---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4. <u>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u>---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5. <u>건축물 및 주택</u> ----- 6. <u>건축물 및 주택</u> -----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법 제194조-----.

□ 관계 법령

지 방 세 법
[법률 제07332호, 2005.1.5]

第3條 (地方稅의 賦課·徵收에 관한 條例<개정 1998.12.31>) ①地方自治團體는 地方稅의 稅口, 課稅客體, 課稅標準, 稅率 기타 賦課·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條例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②삭제 <1988.4.6>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條例의 施行에 따르는 節次 其他 그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則으로 定할 수 있다.

□ 관계 법령/참고

지방세동법시행령 개정사항 요약

지방세법 개정 : 제07332호, 2005.1.5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 제18669호, 2005.1.5

○개정취지

- 현행 종합토지세를 국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재산세)로 이원화하며,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고, 거래세(등록세 등)는 완화함.
- 농업소득세를 5년간 (경작년도 2004~2008) 과세중단

○주요개정내용

-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세율을 30/1000 ⇒ 20/1000 수준으로 하향조정
- 현행 종합토지세 관련규정 전부 삭제
- 자동차세율중 CC당 140원 기준배기량을 1500CC ⇒ 1600CC로 상향조정
-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215/1000로 개정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세율을 법으로 합)
- 지방세 감사청구 결정기한 연장 : 60일 ⇒ 90일 이내
- 토지와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원칙적으로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로 함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내문) : 이어서 붙임

□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안내문

【참고자료】

부동산 보유세제 이렇게 개편 되었습니다

■ 불합리한 종합토지세제의 이원화

- ▶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분리하여
- ▶ 토지·건물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토지, 건물, 주택)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
- ▶ 지방세는 재원조달기능, 국세는 정책세제기능을 담당하도록 개편

■ 불형평한 재산세의 공평과세를 위한 주택통합과세

- ▶ 주택은 토지·건물 통합과세
- ▶ 공평과세가 되도록 과표를 시가기준으로 변경하고 세율 인하 조정

◆ 일반사항

구분	현행	개편
세목	○ 재산세·종합토지세	○ 재산세 ※ 종합토지세 삭제 ○ 종합부동산세(신설)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매년 6월 1일
납부기한	○ 7월말 : 재산세 ○ 10월말 : 종합토지세	○ 7월말 : 건물분 재산세 전액 주택분 " 50% ○ 9월말 : 토지분 재산세 전액 주택분 " 50% ○ 12월15일 : 종합부동산세

◆ 서울체계

구분	현행	개편내용	
		1차(시군구)/재산세	2차(국가)/종부세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건물 구분평가·구분과세 · 토지:종토세(0.2~5%) · 건물:재산세(0.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평가·통합과세 ○낮은세율(3단계) (0.15, 0.3,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가액 9억초과는 높은세율(3단계) (1.0, 2.0, 3.0%)
나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토세 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은세율 · 종합 : 0.2,0.3,0.5% · 별도 : 0.2,0.3,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대지가액 6억원 초과분은 높은세율 · 종합 : 1.0,2.0,4.0% · 별도 : 0.6,1.0,1.6%
사업용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토세 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은세율 · 종합 : 0.2,0.3,0.5% · 별도 : 0.2,0.3,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 40억원 초과분은 높은세율 · 종합 : 1.0,2.0,4.0% · 별도 : 0.6,1.0,1.6%
사업용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세 0.3%,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율인하 · 일반 : 0.25% · 사치성: 4% 	(과세안함)
농지, 공장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토세 0.1,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율인하 농지(0.07), 공장(0.2) 사치성(4%) 	(과세안함)

◆ 과표산정

① 토지과표

- 취·등록세의 토지과표는 개별공시지가 100% 적용
- 재산세(토지분)의 토지과표는 개별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으로 산출

2005부터는 직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세 토지과표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② 건물과표

구 분		'05.1.1~4.30	'05.5.1~6.30	'05.7.10이후
취 득 세 · 등 록 세 과 표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 국세청 기준시가 ◦다세대·연립주택 : 신축건물기준가액(46만원)×각종지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 국세청 기준시가 ◦다세대·연립주택 :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실거래가액 ·'05.71 특별/광역시 ·'06.11 전국 시행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시가표준액 - 신축건물기준가액 (46만원)×각종지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실거래가액 ·'05.71 특별/광역시 ·'06.11 전국 시행
	일반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시가표준액 - 신축건물기준가액 (46만원)×각종지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실거래가액 ·'05.71 특별/광역시 ·'06.11 전국 시행
재산세과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기준시가 × 50% ◦개별주택가격 × 50% ◦건물시가표준액(기준가액 46만원 적용) × 50% 		
공동시설세 과 표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시가표준액(기준가액 46만원 적용) × 50% 		

제천시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보고서

2005. 2. 16.

담당자	담당	차장
[Handwritten Signature]	[Handwritten Signature]	[Handwritten Signature]

1. 조 례 명 : 제천시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2005.1.5. 공포된 제천시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에 제천시새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 필요
3. 주요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05. 1. 25 ~ 2005. 2. 14(21일간)
 - 나. 예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 다. 의견제출 : 없음
 - 라. 기 타 : 입법예고 결과 이상 없음

입 법 예 고

제천시공고 제 2005 - 41 호

제천시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 25.

제 천 시 장

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례명 : 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천시세조례의 일부 내용을 법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기 위함.

□ 주요개정내용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주택이 건축물 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을 조정(제3조 제2항제8호, 제2장제7절 삭제, 제23조 개정)
-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며, 부동산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등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인하에 따른 조문개정 (제25조, 제27조개정, 제27조의2 신설)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른 비과세·감면 신청서 제출규정을 개정 (제27조의3 신설, 제28조 개정)
-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중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개정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주행세 세

율이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제37조, 제40조의3)

- 담배소비세 규정중 지방세법시행령 제173조의2(조정세율)이 신설됨에 따라 조정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그 조정세율을 담배소비세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제55조 제3항신설)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규정을 준용하였던 도시계획세를 새로 개정되는 재산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제83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94조)
- 과세표준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2에서 1000분의1.2로 인하 (제91조)
- 지방세법 부칙 제1조에서 개정된 자동차세의 세율적용 시기를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부칙 제5조에서 농업소득세 규정은 2005년 1월 5일 이후 5년간 과세를 중단하도록 함으로서 조례에서도 부칙으로 같은 특례규정을 정함.

□ 의견제출

이 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2월 14일까지 제천시장(참조: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번호 전화640-5261, FAX 640-5259)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변화와 실천으로 으뜸 충북을 !



충청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군)세조례중 개정정비(안) 통보

1. 행정자치부 세제과-86 (2004.1.1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군)세조례의 일부내용을 법과 일치되도록 정리하기 위한 시(군)세조례중 개정정비(안)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니 시군에서는 정비(안)을 토대로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후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 시(군)세조례중 개정정비(안) 1부. 끝.

충청북도지사

수신자 더01-12(세정업무관련과장)

★지방세무주사보 지방행정사무관 세무회계과장

협조자 지방행정사무관

시행 세무회계과-907 (2005.01.15.) 접수 세정과-613 (2005.01.17.)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상당구 문화동 89) / <http://www.cb21.net>

전화 043) 220-2114 /전송 043) 220-2777 / test@cb21.net / 공개

시·군세조례 정비(안)

1. 시·군세 세목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00조(세목) ① (생 략)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 략) 8. <u>종합토지세</u> ③ (생 략)	제00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 1. ~ 7. (현행과 같음) 8. <삭제> ③ (현행과 같음)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

2. 재산세 과세대상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00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군)내 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 (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 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 (군)내에 기항지(선적항) 또는 정계장 을 둔 것에 한한다.	제00조(과세대상 등) ----- ----- <u>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u> ----- ----- -----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
 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을 조정

3.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항 개정

현행	개정안
<p>제00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p> <p>②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④국·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p>	<p>제00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

<p>⑥상속이 개신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p> <p>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p> <p>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p> <p>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으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p> <p>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p> <p>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	---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사실상의 소유자 등으로 통합·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

4. 재산세 과세표준의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00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00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며, 부동산 재산세의 과표로 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

5.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관련 조문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00조(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제00조(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

가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함은 상업 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

[개정사유]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

6. 재산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00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가. 주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초과 3만6천원+1,200만원 1,6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600만원초과 5만6천원+1,600만원 2,2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2,200만원초과 11만6천원+2,200만원 3,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3,000만원초과 36만6천원+3,000만원 4,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4,000만원초과 85만6천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나.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50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	제00조(세율) ①----- -----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0만원+5,000만원 1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 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 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40만원+2억원 10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 의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 분의4 다. 분리과세대상

<p>물 그 가액의 1,000분의 6</p> <p>라.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3</p> <p>2. 선박</p> <p>가. 고급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50</p> <p>나. 가목이외의 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3</p> <p>3. 항공기 그 가액의 1,000분의 3</p>	<p>(1) 전·담·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p> <p>(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p> <p>(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p> <p>2. 건축물</p> <p>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p> <p>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p> <p>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p> <p>3. 주택</p> <p>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p> <p>나. 가목이외의 주택</p> <table border="0" data-bbox="725 1471 1295 1832"> <thead> <tr> <th data-bbox="725 1471 951 1510"><과세표준></th> <th data-bbox="951 1471 1295 1510"><세율></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725 1510 951 1560">4,000만원이하</td> <td data-bbox="951 1510 1295 1560">1,000분의 1.5</td> </tr> <tr> <td data-bbox="725 1560 951 1640">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td> <td data-bbox="951 1560 1295 1640">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td> </tr> <tr> <td data-bbox="725 1640 951 1832">1억원초과</td> <td data-bbox="951 1640 1295 1832">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p>②(생략)</p>	<p>4. <u>선박</u></p> <p>가. <u>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u></p> <p>나. <u>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 의 1,000분의 3</u></p> <p>5. <u>항공기</u></p> <p><u>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u></p> <p>②(현행과 같음)</p>
--------------	---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인하에 따른 조문개정

7. 재산세의 세율 적용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00조(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p> <p>1. <u>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00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u></p> <p>2. <u>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u></p>

	<p>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00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p> <p>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00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p> <p>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00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p> <p>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00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p>
--	---

[개정사유]

- 토지 및 주택의 세율적용방법을 규정

8. 재산세의 납기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00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00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

	<p>일까지</p> <p>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p> <p>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p> <p>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p> <p>③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p>
--	--

[개정사유]

-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의 납기가 변경,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 납기를 조정

9.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서 제출 대상 확대

현 행	개 정 안
<p>제00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 시(군)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제00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p> <p>-----</p> <p>-----</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p> <p>3.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p> <p>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에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p> <p>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p> <p>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p>	<p>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p> <p>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p> <p>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p> <p>5.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p> <p>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에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p> <p>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p> <p>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p>
--	--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 신청대상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되도록 조문 개정

10.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관련 조문 변경

현행	개정안
<p>제00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p>	<p>제00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6조 ----- ----- ----- -----</p>

실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 ---. ② (현행과 같음)
---------------------------------	-----------------------------

[개정사유]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

11. 구판사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 조정

현행	개정안
제00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00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 ----- ----- 1. -----부동산 2. ----- 부동산 3. -----부동산 4. -----부동산 ②-----부동산 -----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대상을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

12. 재산세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 조정

현 행	개 정 안
<p>제00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p> <p>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p> <p>3. <u>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u> 되었을 때</p> <p>4. <u>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u> 된 때</p> <p>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p> <p>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p> <p><u><신설></u></p>	<p>제00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p> <p>-----</p> <p>-----</p> <p>-----</p> <p>-----</p> <p>1. <u>건축물 및 주택</u> -----</p> <p>2. <u>건축물 및 주택</u> -----</p> <p>-----</p> <p>3. <u>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u>---<u>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u> ----</p> <p>4. <u>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u> ---<u>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u>---</p> <p>5. <u>건축물 및 주택</u> -----</p> <p>-----</p> <p>6. <u>토지, 건축물 및 주택</u> -----</p> <p>-----</p> <p>7. <u>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u></p>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신고대상 및 사유를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

13. 자동차세 세율 조정

현행				개정안			
제00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제00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1. 승용자동차				1.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800cc이하	80원	-	-	-	-
1,5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100원	1,600cc이하	-	-	-
2,000cc이하	19원	1,500cc이하	140원	-	-	1,600cc이하	-
2,500cc이하	19원	2,000cc이하	200원	-	-	-	-
3,000cc이하	24원	2,500cc이하	220원	-	-	-	-
1의2. ~ 6. 생략				1의2.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사유]

- 자동차세중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됨에 따른 조문개정

14. 주행세의 세율조정

현행		개정안	
제00조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한다.		제00조 ①-----	
②(생략)		----- 1,000분의 215-----	
		②(현행과 같음)	

[개정사유]

○ 주행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

15.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00조(납세의무자) ① ~ ④(생략) <신설>	제00조(납세의무자) ① ~ ④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사유]

○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게 함에 따른 납세의무자 추가

16.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 적용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00조(세율) ① ~ ②(생략) <신설>	제00조(세율)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개정사유]

○ 시행령으로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그 조정세율을 담배소비세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문개정

17. 종합토지세 관련조문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00절 종합토지세 <제00조 내지 제00조>	제00절 종합토지세<삭제> <삭 제>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 이원화되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

18. 도시계획세 납세의무자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00절(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00절(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조정

19.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건축물 범위 조정

현행	개정안
<p>제00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u>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u></p> <p>5. <u>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에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u></p>	<p>제00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u></p> <p>5. <u>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u></p> <p>6. <u>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에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u></p>

[개정사유]

-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른 조문개정

20. 도시계획세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현행	개정안
<p>제00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u>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②시장(군수)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u>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제00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 ----- <u>토지·건축물 및 주택</u> ----- ----- ②----- ----- ----- ----- <u>재산세과세대장</u> ----- -----</p>

[개정사유]

- 주택이 토지와 건축물에서 분리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 운영됨에 따른 조문개정

21. 도시계획세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현행	개정안
<p>제0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u>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u></p>	<p>제0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 <u>토지·건축물 및 주택</u> ----- <u>토지·건축물 및 주택</u> -----</p>

<p>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시장(군수)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u>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 ----- ----- ----- -----</p> <p>②----- -----<u>토지·건축물 및 주택</u>----- ----- ----- -----</p>
---	---

[개정사유]

-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조항 문구정리

22.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의 변경

현행	개정안
<p>제00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p>	<p>제00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을 조정

23. 도시계획세의 납기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0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제0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건 축 물	매년 6월 1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 지	매년 6월 1일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사유]

- 변경된 재산세 납기에 맞춰 공동시설세 납기를 조정

24. 도시계획세 세율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00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00조(세율) -----1,000분의 1.5-----.

[개정사유]

-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

25. 도시계획세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현 행	개 정 안
제00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00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 -----재산세----- ----- -----재산세----- -----.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른 문구수정

26. 도시계획세의 신고의무

현 행	개 정 안
제00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제00조(신고의무) ①----- -----건축물 및 주택----- ----- ----- ----- ----- 1. 건축물 및 주택 ----- 2. 건축물 및 주택 ----- -----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과세 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p>4. <u>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u></p> <p>5. <u>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u></p> <p>6. <u>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u></p> <p>②(생략)</p> <p>③<u>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u></p> <p>④<u>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u>종합토지세</u>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u></p>	<p>4. <u>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u></p> <p>5. <u>건축물 및 주택 -----,-----</u></p> <p>6. <u>건축물 및 주택 -----</u></p> <p>②(현행과 같음)</p> <p>③-----<u>법 제194조</u>-----</p> <p>④-----</p> <p>-----<u>법 제194조</u>-----<u>재산세</u></p>
--	---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토지와 건축물에서 분리됨에 따른 조문개정

27. 도시계획세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현행	개정안
제00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	제00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

<p>무자가 제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 ----- ----- ----- 재산세과세대장에----- ----- -----.</p>
--	---

[개정사유]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른 조문개정

28. 부칙 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05. . 조례 제0000호)</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0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제00장제00절의 개정규정(제00조 내지 제00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p>
--

[개정사유]

- 개정된 자동차세 세율적용 시기 및 농업소득세 과세중단 기간을 부칙에서 정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세목) ① (생략)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략) 8. <u>종합토지세</u> ③ (생략)</p>	<p>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 1. ~ 7. (현행과 같음) 8. <삭제> ③ (현행과 같음)</p>
<p>제23조(과세대상 등)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 (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생략)</p>	<p>제23조(과세대상 등)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 (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기항지(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p>
<p>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재산세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p>

현행	개정안
<p>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p> <p>⑥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유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현행	개정안
	<p>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제25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제25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제26조(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p>	<p>제26조(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 ----- -----</p>

현행	개정안
<p>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건축물</p> <p>(1) 주택</p> <p><과세표준> <세율></p> <p>1,200만원이하 1,000분의 3</p> <p>1,200만원초과 3만6천원+1,200만원</p> <p>1,6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p> <p>1,600만원초과 5만6천원+1,600만원</p> <p>2,2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p> <p>2,200만원초과 11만6천원+2,200만원</p> <p>3,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p> <p>3,000만원초과 36만6천원+3,000만원</p> <p>4,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p> <p>4,000만원초과 85만6천원+4,000만원</p> <p style="padding-left: 40px;">초과금액의 1,000분의 70</p> <p>(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p> <p style="padding-left: 40px;">그 가액의 1,000분의 50</p> <p>(3)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6</p> <p>(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p> <p style="padding-left: 40px;">그 가액의 1,000분의 3</p> <p>2. 선박</p> <p>(1) 고급선박</p> <p style="padding-left: 40px;">그 가액의 1,000분의 50</p> <p>(2) 제1목 이외의 선박</p> <p style="padding-left: 40px;">그 가액의 1,000분의 3</p> <p>3. 항공기</p> <p style="padding-left: 40px;">그 가액의 1,000분의 3</p>	<p>제27조(세율) ①-----</p> <p>-----</p> <p>1. 토지</p> <p>가. 종합합산과세대상</p> <p><과세표준> <세율></p> <p>5,000만원이하 1,000분의 2</p> <p>5,000만원초과 10만원+5,000만원</p> <p>1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p> <p>1억원초과 25만원+1억원</p> <p style="padding-left: 40px;">초과금액의 1,000분의 5</p> <p>나. 별도합산과세대상</p> <p><과세표준> <세율></p> <p>2억원이하 1,000분의 2</p> <p>2억원초과 40만원+2억원</p> <p>10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p> <p>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p> <p style="padding-left: 40px;">초과금액의 1,000분의 4</p> <p>다. 분리과세대상</p> <p>(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p> <p>(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p> <p>(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p> <p>2. 건축물</p> <p>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p>

현행	개정안												
<p>②(생략)</p>	<p>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 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p> <p>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p> <p>3. 주택</p> <p>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p> <p>나. 가목이외의 주택</p> <table border="0"> <tr> <td data-bbox="763 936 925 966"><과세표준></td> <td data-bbox="1061 936 1163 966"><서울></td> </tr> <tr> <td data-bbox="715 982 911 1015">4,000만원이하</td> <td data-bbox="971 982 1159 1015">1,000분의 1.5</td> </tr> <tr> <td data-bbox="715 1031 911 1095">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td> <td data-bbox="971 1031 1275 1095">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td> </tr> <tr> <td></td> <td data-bbox="977 1115 995 1145">3</td> </tr> <tr> <td data-bbox="715 1160 859 1194">1억원초과</td> <td data-bbox="963 1160 1275 1224">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td> </tr> <tr> <td></td> <td data-bbox="963 1244 981 1274">5</td> </tr> </table> <p>4. 선박</p> <p>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p> <p>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p> <p>5. 항공기</p> <p>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p> <p>②(현행과 같음)</p>	<과세표준>	<서울>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과세표준>	<서울>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27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 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 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p>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p> <p>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제천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p> <p>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p>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p> <p>-----</p> <p>-----</p> <p>-----</p> <p>-----</p> <p>-----</p> <p>-----</p> <p>-----</p> <p>-----</p>

현행	개정안
<p>1. (생략)</p> <p>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p> <p>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p> <p>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p> <p>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p> <p>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p>	<p>1. (현행과 같음)</p> <p>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p> <p>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p> <p>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p> <p>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p> <p>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p> <p>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p> <p>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p>
<p>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6조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30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p>	<p>제30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동산 2. -----부동산 3. -----부동산 4. -----부동산 <p>②-----부동산</p> <p>-----</p>
<p>제32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 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되었을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p><신설></p>	<p>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 및 주택 ----- 2. 건축물 및 주택 -----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5. 건축물 및 주택 -----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현	행	개	정	안																																																								
<p>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 1대 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승용자동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영 업 용</th> <th colspan="2">비 영 업 용</th> </tr> <tr> <th>배기량</th> <th>시시당 세액</th> <th>배기량</th> <th>시시당 세액</th> </tr> </thead> <tbody> <tr> <td>1,000시시이하</td> <td>18원</td> <td>800시시이하</td> <td>80원</td> </tr> <tr> <td>1,500시시이하</td> <td>18원</td> <td>1,000시시이하</td> <td>100원</td> </tr> <tr> <td>2,000시시이하</td> <td>19원</td> <td>1,500시시이하</td> <td>140원</td> </tr> <tr> <td>2,500시시이하</td> <td>19원</td> <td>2,000시시이하</td> <td>200원</td> </tr> <tr> <td>3,000시시이하</td> <td>24원</td> <td>2,500시시이하</td> <td>220원</td> </tr> </tbody> </table> <p>1의2. ~ 6. 생략</p> <p>② (생 략)</p>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이하	18원	800시시이하	80원	1,500시시이하	18원	1,000시시이하	100원	2,000시시이하	19원	1,500시시이하	140원	2,500시시이하	19원	2,000시시이하	200원	3,000시시이하	24원	2,500시시이하	220원	<p>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p> <p>1. 승용자동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영 업 용</th> <th colspan="2">비 영 업 용</th> </tr> <tr> <th>배기량</th> <th>시시당 세액</th> <th>배기량</th> <th>시시당 세액</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600시시이하</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1,600시시이하</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500시시초과</td> <td>-----</td> <td>2,000시시이하</td> <td>-----</td> </tr> </tbody> </table> <p>1의2.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	-----	-----	-----	1,600시시이하	-----	-----	-----	-----	-----	1,600시시이하	-----	-----	-----	-----	-----	2,500시시초과	-----	2,000시시이하	-----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이하	18원	800시시이하	80원																																																									
1,500시시이하	18원	1,000시시이하	100원																																																									
2,000시시이하	19원	1,500시시이하	140원																																																									
2,500시시이하	19원	2,000시시이하	200원																																																									
3,000시시이하	24원	2,500시시이하	220원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	-----	-----	-----																																																									
1,600시시이하	-----	-----	-----																																																									
-----	-----	1,600시시이하	-----																																																									
-----	-----	-----	-----																																																									
2,500시시초과	-----	2,000시시이하	-----																																																									
<p>제40조의3(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법 제196조의17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한다.</p> <p>②(생 략)</p>		<p>제40조의3 ①----- ----- ----- 1,000분의 215-- -----.</p> <p>②(현행과 같음)</p>																																																										
<p>제53조(납세의무자) ① ~ ④(생 략) <신 설></p>		<p>제53조(납세의무자) ① ~ ④(현행과 같음)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p>																																																										

현행	개정안
<p>제55조(세율) ① ~ ②(생략) <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7절 종합토지세</u></p> <p><u><제71조 내지 제82조></u></p> <p>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토지 <u>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u></p> <p>2. 건축물 <u>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u></p> <p>제85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p> <p>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p>	<p>제55조(세율) ① ~ ②(현행과 같음) <u>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7절 종합토지세<삭제></u></p> <p><u><삭제></u></p> <p>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제85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p> <p>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p> <p>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p>

현행	개정안
<p>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u>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u>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 -----<u>토지·건축물 및 주택</u>----- ----- ----- ②----- ----- ----- -----<u>재산세과세대장</u>----- ----- -----</p>
<p>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u>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u>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u>토지·건축물 및 주택</u>----- -----<u>토지·건축물 및 주택</u>----- ----- ----- ②----- -----<u>토지·건축물 및 주택</u>----- ----- -----</p>

현행	개정안									
<p>제89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p>	<p>제89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p>	<p>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대상</th> <th>과세기준일</th> <th>납기</th> </tr> </thead> <tbody> <tr> <td>건축물</td> <td>매년 5월 1일</td> <td>매년 6월 16일 ~ 6월 30일</td> </tr> <tr> <td>토지</td> <td>매년 6월 1일</td> <td>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td> </tr> </tbody> </table>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기	건축물	매년 5월 1일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	토지	매년 6월 1일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p>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기								
건축물	매년 5월 1일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								
토지	매년 6월 1일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p>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91조(세율) -----1,000분의 1.5-----.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 -----재산세----- ----- -----재산세----- -----.
제93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신고의무) ①----- -----건축물 및 주택----- ----- -----시장-----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 및 주택 ----- 2. 건축물 및 주택 ----- -----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과세 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비과세건 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5. 건축물 및 주택 ----- ----- 6. 건축물 및 주택 ----- -----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법 제194조----- ----- ----- -----.